

FAO·WHO合同食品規格

朴 奉 相

〈保健社會部 食品1課長〉

目 決

1. FAO, WHO 合同食品規格委員會의 設立
2. FAO, WHO 合同食品規格委員會規約
3. FAO, WHO 合同食品規格委員會에 依한 食品規格의 一般原則
4. FAO, WHO 合同食品規格委員會에 依한 「輸品規格」
5. FAO, WHO 合同添加物專門家委員會에 依한 「添加物의 許容量」
6. FAO, WHO 合同殘留農藥專門家委員會에 依한 「殘留農藥의 許容量」
7. FAO, WHO 合同食品規格委員會에 依한 「包裝食品의 表模示基準」

음과 같은 下部機構를 設置하고 있다.

1. FAO WHO 合同食品規格 委員會의 設立

1961年の FAO(食糧農業機構)總會 및 1962年
의 WHO(世界保健機構)理事會는 FAO 와
WHO와의 合同食品規格委員會를 設立하고 國
際的으로 食品의 規格基準을 統一하는 作業을
行할 것을 勸告하였다.

이 勸告에 基因하여 1962年에 FAO WHO
合同食品規格委員會(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가 設立되고 1963
年에 第1回 會議를 開催한 以來 1974年的 第
10回會議에 이르고 있다.

이 委員會(Commission)는 規則에 따라 다

A. FAO, WHO 合同牛乳, 乳製品의 規範
에 關한 政府專門家部會(Joint FAO/WHO
Committee of Government Experts on the
Code of Principles Concerning Milk and
Milk Products)

B 1. 世界的一般問題基準部會 (World-wide
general Subject Codex Committees)

1. 食品添加物部會(Codex Committee on
Food Additives)
2. 食品衛生部會(Codex Committee on
Food Hygiene)
3. 食品表示部會(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4. 一般原則部會(Codex Committee on

General Principles)

5. 分析样本部會(Codex Committee on Methods of Analysis and Sampling)
6. 殘留農藥部會(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B 2. 世界的食品規格部會(Word-wide Codex Commodity Committees)

1. 可可豆製品及巧克力規格部會(Codex Committee on Cocoa Products and Chocolate)
2. 砂糖規格部會(Codex Committee on Sugars).
3. 加工果實野菜規格部會(Codex Committee on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4. 油脂規格部會(Codex Committee on Fats and Oils)
5. 食肉 食肉製品規格部會(Codex Committee on Meat and Meat Products)
6. 魚類水產製品規格部會(Codex Committee on Fish and Fishery Products)
7. 特殊食品規格部會(Codex Committee on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B 3. 地域的規格部會(歐洲)(Regional Codex Committee(Europe))

1. 天然礦泉水規格部會(Codex Committee on Natural Mineral Waters)
- C. 歐洲調整委員會(FAO/WHO Coordinating Committee for Europe)

D. ECE/食品規格委員會合同急速冷凍食品規格專門家會議(Joint ECE/Codex Alimentarius Group of Experts on Standardization of Quick Frozen Foods)

E. ECE/食品規格委員會合同果汁規格專門家會議(Joint ECE/Codex Alimentarius Group of Experts on Standardization of Fruit Juices)

2. FAO WHO 合同食品規格委員會規約

第1條 食品規格委員會는 第5條의 規定에 따라 FAO, WHO合同食品規格計劃의 作成에 關한 모든 事項에 對하여는 食糧農業機構(FAO) 및 世界保健機構(WHO)의 事務局長에 對하여 提案을 行하고 諒問에 應하여야 한다.

FAO, WHO合同食品規格計劃의 目的是 다음과 같다.

1. 消費者的 健康을 保護하고 食品去來에 있어 公正한 慣行을 保證하는 것.
2. 國際政府機關 및 非政府國際機關에 依하여 行하여 지는 모든 食品規格作業을 調整하는 것.
3. 適當한 機關의 援助에 따라 規格案作成에 關하여 優先順位를 決定하고 作成을 開始하며, 指導를 行하는 것,
4. 3의 規定에 따라 完成하고 各國政府가 受諾한 후 地域規格 또는 世界規格으로 食品規格中에 公表하고 可能한 한 第2號의 規定에 依據他機關에 依하여 完成된 規格도 함께 公表하는 것.
5. 미리公表된 規格을 그후의 進步에 따라 適當한 調整을 行하고 이를 改正하는 것.

第2條 委員會에는 國際食品規格에 關心을 가지는 모든 FAO 및 WHO의 加盟國 및 準加盟國이 이에 加盟할 수 있다. 加盟은 FAO 또는 WHO의 事務局長에 對하여 加盟國으로 되고자 하는 뜻을 通告하는 바에 따라 行하여 진다.

第3條 委員會의 加盟國이 아닌 FAO 및 WHO의 加盟國 또는 準加盟國으로서 委員會의 作業에 對하여 特別한 關心을 가지는 國家는 適宜 FAO 또는 WHO 事務局長에 要請하여 委員會 또는 그 下部機關 또는 特別會議에 observer로 出席할 수가 있다.

第4條 FAO 또는 WHO의 加盟國 또는 準加盟國以外의 國連加盟國은 그의 要請에 따라 Observer國承認에 關한 FAO 및 WHO의 規定에 따라 招請을 받아 observer로 하여 委員會會議에 參席할 수가 있다.

第5條 委員會는 FOA 및 WHO 事務局長을 通하여 FOA總會 및 WHO의 適當한 機關에 對하여 報告 및 勸告를 行한다. 結論 및 勸告를 包含한 報告書는 곧 關係加盟國 및 國際機關에 情報로서 配布된다.

第6條 委員會는 各加盟國에 屬하는 世界의 各地理的 地域을 充分히 考慮한 代表的 構成으로서의 執行委員會를 設置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會期中에 있어서 執行委員會는 委員會의 執行機關으로서 活動한다.

第7條 委員會는 그 任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必要한 資金을前提로 하여 下部機關을 設置할 수 있다

第8條 委員會는 手續規則을 採擇하고 이를 修正할 수가 있다.

그 規則은 FAO 및 WHO의 手續을 定하는 바에 따라 確認하고 兩事務局長의 承認을 얻어 發效한다.

第9條 委員會 및 加盟國의 議長을 擔密하고 있지 않는 以外의 下부機關의 運營費는 FAO WHO合同食品規格計劃의 豫算에 依據充當한다.

당해 豫算은 兩機關을 代表하여 WHO가 그의 財務規則에 따라 管理한다.

FAO 및 WHO의 兩事務局長은 各 機關이 負擔하여야 할 計劃經費의 分擔金을 共同으로 算出하여 兩機關의 通常豫算에 각各 合當하는 年間經費를 計上하고 適當한 管理機關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0條 委員會加盟國의 規格案作成作業에 要

하는 모든 經費(會議, 資料 및 번역에 關한 經費를 包含한다)는 獨自의으로 行하는 경우 이거나 委員會의 勸告에 依하는 경우이거나 를 莫論하고 當해 政府에 依하여 支出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다만, 委員會에 가름하여 어떤 國家의 政府가 行하는 作業의 經費中特定한 것은 承認된 豫算의 範圍內에서 委員會의 運營費라고 認定하는 것을 勸告할 수 있다.

3. FAO WHO 合同食品規格 委員會에 依한 食品規格 의 一般原則

食品規格의 目的

一. 食品規格은 一定한 形式에 依據 이루워지고 國際的으로 採擇된 食品規格의 集成이다. 食品規格은 消費者的 健康을 保護하고 食品去來에 있어 公正한 慣行을 確立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食品規格의 公表는 食品의 定義 및 規格基準의 嚴密한 設定에 따라 그 指針을 賦與하여 이를 促進하므로서 食品規格相互間의 調和를 얻고 國際貿易에 圓滑하게 힘을 企圖하는 것이다.

食品規格의 範圍

二. 食品規格은 消費者에 提供되는 加工, 半加工 및 生鮮의 모든 主要한 食品에 對한 規格을 包含하는 것이다. 食品原材料는 食品規格의 目的을 達成함에 必要한 것을 包含하여야하는 것이다.

食品規格의 條項은 食品衛生, 食品添加物, 殘留農藥, 汚染物質, 表示 및 分析과 Sampling法을 包含하는 것이다.

食品規格의 性格

三. 食品規格은 消費者에 對하여 純良하고
바르게 表示되고 安全하고 缺陷이 없는 食品
을 保證하기 위한 目的으로 하는 規格基準을
포함하는 것이다.

各各 그 食品規格은 그 對象으로 하는 食品
에 對하여 固有의 規格基準을 定하는 것이고
이때에 있어서는 당해 規格中에 適用을 排除
하는 規定이 없는 限 食品規格中의 一般規定
이 適用되는 것이다.

各各 그 食品規格은

(1) 委員會에 依하여 採擇된 衛生, 表示 分

析法 및 其他 一般事項을 수용함과 同時
에,

(2) 다음 基準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하여
適宜規格을 두어야 한다.

(a) 食品의 名稱, 定義 및 成分

이것은 食品의 名稱과 定義(必要가 있을 때
에는 그 科學的인 名稱을 包含)을 定하는 것
이 品質基準을 包含한 成分規格을 가름할 수
가 있다.

(b) 衛生基準

이것은 그 食品特有의 衛生基準 및 그 安全
과 缺陷이 없는 狀態에서 市場流通을 確保하
기 위하여 必要한 保護措置를 包含하는 것이다.

(c) 重量 및 寸法의 基準

容器內의 充填度, 重量, 寸法 또는 適當한
方法과 基準에 따라 單位의 數로 하는 것이다

(d) 表示의 基準

이것은 그 食品의 特有한 表示의 要件을 包
含하는 것이다.

(e) Sampling 試驗 및 分析方法

이것은 그 食品特有의 Sampling試驗 및 分
析方法을 카바하는 것이다.

食品規格의 受諾

四A. 各各의 食品規格은 當事國의 制定하는
法的 및 行政的 手續에 따라, 輸入品이든 國
產品이든 間에 당해 食品 그 國家의 領域內에
있는 流通에 關하여 受諾된다. 그 受諾의 方
式은 下에 揭記하는 바와 같다.

(一) 完全受諾

完全受諾이라 함은 食品規格에 定하여진 規
格基準에 完全히 適合된 食品으로서 規格에
定하여진 名稱下에 그 나라의 領域內에 있
어서 自由로히 流通할 것을 保證하는 것을 뜻한
다.

또한 이와같은 受諾을 行하였든 國家는 規
格에 適合하지 아니한 食品은 規格에 定하여
진 名稱下에 流通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그의 國家에 있어서는 規格에 適合하
는 安全한 食品은 規格이 特히 사람 植物 또
는 動物의 健康에 對한 配慮에 따라 定하여진
規定을 除外하고는 消費者的 健康 또는 食品의
規格에 關한 如何한 法律規定 또는 行政規定에
依하여도 流通에 阻害되지 아니함을 뜻한다.

(二) 要求宣言附受諾(보다 嚴格한 規格基準

또는 追加規格基準을 要求하는 宣言을 附한
受諾)要求宣言附受諾이라 함은 그 國家가 食
品規格中에 定하여진 規格基準보다 嚴格한 規
格基準 또는 追加規格基準을 要求하고 그 要
求事項을 安全하고 詳細하고 또한 明確하게 하
여 食品規格을 受諾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에 있어서 그의 要求에 關係되는 部分
以外의 食品規格中의 規定은 그 나라 消費者的
의 健康 또는 食品의 規格에 關한 法律 또는
行政規定에 適合하였을 때에는 受諾된 것으로
본다.

(三) 目標受諾

目標受諾이라고 함은 그의 國家가 年數를

指定한 후에 食品規格을 受諾하는 意圖를 明確하게 함과 同時に 그 間에 있어서 規格에適合하는 安全한 食品은 規格이 특히 사람, 植物 또는 動物의 健康에 對한 配慮에 基因하여 定하여진 規格을 除外하고는 消費者의 健康 또는 食品의 規格에 關한 如何한 法律規定에 依하여도 그 나라 領域內에 流通은 阻害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四) 僅少差條件附受諾

僅少差條件附受諾이라 함은 그 나라가 食品規格委員會의 받아들이는 多少의 差異를 條件附로 하여 食品規格에 對해서 하나로 定하는 完全受諾을 行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의 差異는 規格에 정하여진 規格基準보다 嚴格한 것이 아니면 또한 規格基準을 追加하지 아니함을 要한다.

그나라는 受諾에 對하여 그 差異 및 그에附한 條件理由와 다음 事項을 明白히 하여야 한다.

(a) 規格에 完全히適合하는 製品이 그 나라의 領域內에 있어 自由로이 流通될 수 있는지의 可否.

(b) 그 나라가 將來完全受諾을 할 때의 可能性의 有無와 可能할 경우에 있어서의 時期.

四 B. 前記의 如何한 方法에 依하여서도 食品規格을 受諾할 수 없는 나라는 다음 事項을 明白히 하여야 한다.

(一) 規格에適合하는 製品이 그 나라의 領域內에 自由로이 流通할 수 있는지의 可否.

(二) 現行의 또는 그 나라가 提案하고자 하는 規格基準과 規格과의 差異 및 疏明할 수 있는 差異의 理由.

四 C.

(一) 四 A에 規定된 如何한 方式에 따라

食品規格을 受諾한 國家는 그 規格을 그 나라 領域內에 流通하는 모든 國產品 및 輸入品에 對하여 公平히 適用할 義務를 진다.

따라서 受諾國은 그 나라의 輸出業者 및 輸出品製造業者에 對하여 四A에 規定한 如何한 方式에 따라서도 食品規格을 受諾한 輸入國의 規格基準에 따라 理解를 促進하고 그에適合하게 하는 助言과 指導를 行하여야 할 것이다.

(二) 輸入國에 있어서 食品規格에適合하지 아니한 食品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表示에 있어서나 其他 어명한 事由에 있어서도 輸出國의 責任當局에 對하여 關聯있는 모든 事實을 通告하고 特히 不適合의 責任이 輸出國內의 關係者에게 있다고 判斷될 경우에는 製品의 出所(輸出業者的 住所 姓名)을 細部的으로 通告하여야 할 것이다.

4. FAO WHO 合同食品規格委員會에 依한 「食品規格」

1962年에 國際聯合의 專門機關인 FAO WHO (國際食糧農業機構)와 (世界保健機構)가 合同으로 國際食品規格을 制定하기 위하여 發足된 “國際食品規格委員會”는 各國(1974年 8月現在 105個國)의 協力を 얻어 順調로 히 發展하고 있다.

現在 50數品目의 食品의 最終規格案이 作成되고 이에 對하여 各國의 諾否를 求하고 있는段階에 있는 것이다.

Food에 國際規格을 定하는 目的是 貿易의 圓滑化에 依한 食糧資源의 損失을 防止하는 것이고 國家에 따라 規格을 달리 하므로서 不利益과 消費者保護에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다.

(36號 계속)